

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(제15조 관련)

구 분	상당계급	5 급	6 급	7 급	8 급	9 급
		연 구 관	연 구 사			
일 반 직		5 급	6 급	7 급	8 급	9 급
		연 구 관	연 구 사			
기 능 직			기능6급이상	기능7급	기능8급	기능9급이하
외무공무원		5등급	4등급	3등급	2등급	1등급
경찰공무원		경 정	경 감 경 위	경 사	경 장	순 경
소방공무원		소 방 령 지방소방령	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	소 방 장 지방소방장	소 방 교 지방소방교	소 방 사 지방소방사
군 인		대 위	중 위	소 위 준 위	원 사 상 사 중 사	하 사
군 무 원		5 급	6 급	7 급	8 급	9 급
국가정보원 직 원		5 급	6 급 기능직기능 6급이상	7 급 기능직기능 7급	8 급 기능직기능 8급	9 급 기능직기능 9급이하
별정직공무원		5 급 상 당	6 급 상 당	7 급 상 당	8 급 상 당	9 급 상 당
전문경력관		가 군	나 군		다 군	
계약직 공무원 · 임기제 공무원	일 반 계약직	연봉등급 "5"호로 재직한 기간	연봉등급 "6"호로 재직한 기간	연봉등급 "7"호로 재직한 기간	연봉등급 "8"호로 재직한 기간	연봉등급 "9"호로 재직한 기간
	한 시 임기제					
	전 문 계약직				"마"급으로서 "마"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	"마"급으로서 "마"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
	전 문 임기제	"나"급으로 재직한 기간	"다"급으로 재직한 기간	"라"급으로 재직한 기간		

비고 : 별표 2의3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.